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콘텐츠진흥원 종합감사 -

2020. 12. .

처분요구일람표

1. 기간제 근로자 운영 부적정 (통보)
2. 기간제 근로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3.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부적정 (주의)
4.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주의)
5. 국외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
6. 수탁사업 수익금 처리 부적정 (통보)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기간제 근로자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콘텐츠진흥원

관 계 부 서 ○○○○○, ■■■■■

내 용

경북콘텐츠진흥원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제3호 및 제5조 내지 제9조 규정에 따라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경북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사업, 경북콘텐츠 코리아랩 사업을 수행하고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의제 되어 있다.

더 나아가 같은 법률 제5조에는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례에 따르면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의 기간 내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점,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체결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사업 선정’ 공고(제2018-02호)를 하면서 사업신청 자격 요건으로 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센터장), 저작권 전담인력(운영인력 1명 및 SW컨설턴트 전담인력 1명)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 직원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상근 근무자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에서 1인 창조기업의 사업경쟁력 강화와 전략적인 육성을 위해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정계획’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15호)의 사업신청 요건으로 총괄책임자(센터장)와 매니저는 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상근 근무자여야 하며,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는 계약직도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경북콘텐츠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 에서는 공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 또는 완성에 필요한 기간의 범위를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특정한 사업이 완료 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종료를 통보하고, 근로자 스스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 된 후 신규입사를 위한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게 하여야 했다.

특히, 재단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 되어왔거나 향후에도 지속 될 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여야 했다.

그런데 재단에서는 2013. 3. 1.부터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 2018. 3. 29.부터 ‘경북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사업, 2015. 1. 30.부터 ‘경북콘텐츠 코리아랩 사업’을 각각 2020. 11. 감사일 현재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면서, 2018.부터는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5명을 신규 채용하여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종료 된 후에도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형식적으로 연장하고, 신규입사를 위한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시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¹⁾하면서 1인 창조지원센터(재단 직원조직도) 총괄매니저  등 5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법령에 규정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2018. 3. 29.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사업 선정’ 공고 기준에서 제시한 사업신청 자격 요건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 전담인력을 채용하도록 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경북저작권서비스센터(재단 직원조직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장은

- ①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확정된 기간 범위 내에서 근로기간(종료시점)을 명확히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 반드시 사역을 종료 하는 등 관련법령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운영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라며,(통보)
- ② 향후 부당한 정규직 전환자 발생 여부 등 결과를 차기 감사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할 예정이오니 기간제 근로자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경 상 북 도

시 정

제 목 기간제 근로자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콘텐츠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콘텐츠진흥원은 「비정규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원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조와 제5조, 제15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다.

경북콘텐츠진흥원의 「비정규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조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라 함은 계약직 직원²⁾, 육아휴직 대체근무자³⁾, 기간제 근로자⁴⁾, 단시간 근로자⁵⁾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에 대해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대체 근무자 및 계약직 직원은 진흥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부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제109조, 경북콘텐츠진흥원 「취업규칙」 제28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휴일

-
- 2) 특정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매년(통상 2년) 성과평가를 통해 연봉결정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직원을 말한다.
3) 진흥원 정규직원의 육아휴직에 따라 결원된 직원을 대신하여 채용된 대체근무자를 말하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진흥원의 사무보조 및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5)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근로시간이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경북콘텐츠진흥원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진흥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하였다.

그 결과, 2019년부터 2020. 9월까지 16명의 비정규직근로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시간당 단가산정 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산정 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액⁶⁾으로 산정하였으며,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월 10시간분의 정액분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장은

기간제 근로자 급여 및 수당에 대한 자체 규정을 근로기준법 등 관계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정 하시고,(시정) 앞으로 관계규정을 숙지하여 업무에 철저히 기하시기 바랍니다.

6) 매 시간에 대하여 「봉급기준액 × 55% × 1/209 × 150%」을 지급.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콘텐츠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아래 “진흥원”)은 경상북도(예산담당관실)의 기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임직원의 업무성과에 차등하여 매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경상북도 산하기관·단체 경영평가결과」에 따르면 임직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의 지급대상은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정규직원으로 연봉(보수)월액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고 연봉(보수)는 평가대상연도 기준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관장은 성과급 지급 총액 한도 내에서 근무실적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고 최고-최저 등급간 지급률의 차이는 50%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최고는 20% 이내, 최저는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총액 범위내에서 최고 등급은 20% 이내 최하등급은 정원의 10% 이상으로 강제 배분·지급하여야 했다.

1. 2020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의 경우(기관평가 A등급)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2020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 1]과 같이 S등급(150%)부터 C등급(100%)까지 4단계로 성과급 등급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도, 최고 S등급 인원을 정원 28명의 20%(5.6명) 이내인 5명으로 배분해야 함에도 6명으로 인원을 배정하여 직원 28명에게 성과급 91,475천 원을 지급하였다.

[표 1] 2020년 성과급 지급 인원 배분 내역

(단위: 명)

구 분	합 계	S등급(150%)	A등급(135%)	B등급(120%)	C등급(100%)	비 고
배분 규정		20% 이내			10% 이상	
의무 배분		5.6명 이내			2.8명 이상	
실제배분	28	6	11	8	3	
정당배분	28	5	12	8	3	

결과적으로 지급률 135%의 A등급을 받아야 할 1인이 지급률 150%의 S등급을 받아, 위 1인에게 대략 400천 원(S등급 6인의 15% 평균 성과급) 정도의 추가 성과급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

2. 2019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의 경우(기관평가 S등급)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2019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S등급(180%)부터 C등급(130%)까지 4단계로 성과급 등급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도, 최고 S등급 인원을 정원 23명의 20%(4.6명) 이내인 4명으로 배분해야 함에도 5명으로 인원을 배정하여 직원 23명에게 성과급 95,409천 원을 지급하였다.

[표 2] 2019년 성과급 지급 인원 배분 내역

(단위: 명)

구 분	합 계	S등급(180%)	A등급(160%)	B등급(150%)	C등급(130%)	비 고
배분 규정		20% 이내			10% 이상	
의무 배분		4.6명 이내			2.3명 이상	
실제배분	23	5	8	7	3	
정당배분	23	4	9	7	3	

결과적으로 지급률 160%의 A등급을 받아야 할 1인이 지급률 180%의 S등급을 받아, 위 1인에게 대략 500천 원(S등급 5인의 20% 평균 성과급) 정도의 추가 성과급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

3. 2018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의 경우(기관평가 A등급)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2018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아래 [표 3]과 같이 S등급(150%)부터 C등급(100%)까지 4단계로 성과급 등급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도, 최저 C등급 인원을 정원 21명의 10%(2.1명) 이상인 3명으로 배분해야 함에도 1명으로 인원을 배정하여 직원 21명에게 성과급 74,681천 원을 지급하였다.

[표 3] 2018년 성과급 지급 인원 배분 내역

(단위: 명)

구 분	합 계	S등급(150%)	A등급(130%)	B등급(120%)	C등급(100%)	비 고
배분 규정		20% 이내			10% 이상	
의무 배분		4.2명 이내			2.1명 이상	
실제배분	21	4	8	8	1	
정당배분	21	4	8	6	3	

결과적으로 지급률 100%의 C등급을 받아야 할 2인이 지급률 120%의 B등급을 받아, 위 2인에게 대략 500천 원(B등급 8인의 20% 평균 성과급)씩 총 1,000천 원 정도의 추가 성과급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장은**

앞으로 경영평가 성과급이 관계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콘텐츠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 재무회계규칙」 제72조에 따르면 이 규정 및 정관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 등의 관련법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제47조에 따르면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고 세출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는 세출예산 과목별 기준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여야 했다.

1. 민간위탁금(307-05) 과목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르면 민간위탁금(307-05)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 대행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이며, 보조금 관계법령,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민간보조사업을 위탁금으로 예산편성 금지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표 1]과 같이 민간위탁금(307-05) 과목에서 예산편성이 금지되어 있는 민간보조사업인 경북문화콘텐츠 기업지원사업 등 27건 6,674백만 원을 편성 및 집행하였다.

[표 1] 민간위탁금(307-05) 부적정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액	적 요	부적정 이유	비 고
	6,674	27건		
2020	573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육성(예천)	민간경상보조	
8건	700	지역특화 콘텐츠개발지원사업	"	
2,098	216	경북 문화콘텐츠 기업지원사업	"	
	233	스타급 스토리텔러 양성 사업	"	
	114	콘텐츠개발 지역기업 지원사업	"	
	42	영상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	
	40	경북 콘텐츠 코리아랩 운영사업	"	
	180	콘텐츠누림터 유지 및 강화사업	"	
2019	492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육성(예천)	민간경상보조	
10건	260	지역특화소재 콘텐츠개발지원(문경)	"	
1,711	235	경북 문화콘텐츠 기업지원사업	"	
	122	오감콘텐츠육성센터 조성지원	"	
	162	융복합콘텐츠제작지원	"	
	19	엄마까투리 지역기업 산업화지원	"	
	75	여중군자장계향일대기다큐멘트리제작 지원	"	
	66	대형과녁활쏘기 체험장 조성사업	"	
	226	경북 콘텐츠 코리아랩 운영사업	"	
	54	콘텐츠누림터 유지 및 강화사업	"	
2018	455	경북콘텐츠코리아랩운영사업	민간경상보조	
9건	510	2017지역특화스포츠관광산업육성사업(예천)	"	
2,865	174	경북문화콘텐츠기업지원사업	"	
	210	369 경북대구스타관광 벤처 육성사업	"	
	732	지역활용형VR/AR콘텐츠제작지원	"	
	285	지역특화콘텐츠개발(성주)	"	
	270	경북콘텐츠누림터조성지원	"	
	176	2017지역특화콘텐츠개발(호보트)	"	
	53	2017지역특화콘텐츠개발(병산탈춤)	"	

2. 기타보상금(301-12) 과목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타보상금(301-12)은 법령·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과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등으로 규정 되어 있다.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표 2]와 같이 기타보상금(301-12) 과목에서 예산편성이 불가한 민간경상보조사업인 1인 창조기업 선택형 지원사업을 3차례 134백만 원을 편성 및 집행하였다.

[표 2] 기타보상금(301-12) 부적정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액	적 요	부적정 이유	비 고
	134	3건		
2020	21	2020년 1인 창조기업 선택형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2019	18	2019년 1인 창조기업 선택형 지원사업	〃	
2018	95	2018년 1인 창조기업 선택형 지원사업	〃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장은

앞으로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예산편성 및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회계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제 목 국외여비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콘텐츠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북콘텐츠진흥원은 문화콘텐츠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위해 임직원 대상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출장여비를 집행하고 있다.

「경북콘텐츠진흥원 여비규정」 제1조와 제3조에 따르면 직원이 업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임직원의 직급별 여비 세부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14.10월)방안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북콘텐츠진흥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여비 지급 구분표와 [표 1]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 여비지급 구분표 준용 예시 등과 같이 국외여비를 지급하였어야 했다.

[표 1] 국민권익위원회 여비 지급 구분표 준용 예시

공무원 구분 (해당공무원)	1호 나목 (차관)	1호 다목 (고위공무원 가급)	1호 라목 (고위공무원 나급)	2호 가목 (3~5급)	2호 나목 (6급 이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구분	기관장	감사	이사	1~2급	3급 이하
경북콘텐츠 진흥원 경우		원장		3급 이상	4급 이하

그런데 경북콘텐츠진흥원은 2017.11월부터 지금까지 국외여비를 지급할 때 직원에게는 2호 가목으로 체재비를 지급하였으며 그 중 4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보다 높게 책정한 결과 18회 1,557\$(약 170만원)의 체재비를 추가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장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재단의 4급 이하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과다 지급된 국외여비 \$1,557(약 170만원)을 환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고,(시정) 앞으로 이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통 보

제 목 수탁사업 수익금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콘텐츠진흥원
 관 계 부 서 ■■■■■
 내 용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아래 “진흥원”)에서는 문화콘텐츠 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해 2014년부터 경상북도 전액도비 지원사업으로 “경북문화콘텐츠 기업지원사업”을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1] 2017 ~ 2020 경북문화콘텐츠 기업지원사업 현황

년도별	예산액(백만원)	사업내용	지원기업 수	道 예산과목
합 계	1,000		14개소	
2020	320	문화콘텐츠 제작지원,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등	추진 중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
2019	280		5개소	
2018	200		4개소	
2017	200		5개소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도지사는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 금액을 확정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 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0)”의 예산과목에서 사업 종료 후 정산은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의 예와 같이 한다라고 되어있다.

또한 “경북문화콘텐츠 기업지원사업” 교부조건에 따르면 수탁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우리 도와 협의하여 우리 도로 반환 또는 당해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도의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도와 협의하여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반환 또는 당해 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했다.

한편 진흥원에서는 내부규정인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관리규칙」에 따라 문화콘텐츠개발 등을 위한 과제수행자에게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과제수행자에게 저작권, 판권 등 지적재산권의 이양을 조건으로 지원금의 100분의 10의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런데 진흥원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도의 위수탁사업인 “경북문화콘텐츠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지원기업 14개소에서 기술료 36,327천원(위·수탁사업의 수익금)을 징수하고도 도에 반환 또는 당해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지 아니하고 진흥원의 자체 세입으로 처리 하였다.

조치할 사항 재단법인 경상북도콘텐츠진흥원장은

경상북도 위·수탁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 도해당부서와 협의하여 반환 또는 목적사업 집행 등 처리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통보)